

[특집]

# 한국교회 내 신앙의 특전을 통한 혼인유대 해소의 적용 가능성 연구

■  
김 의 태

[수원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신부]

서 론

1. 신앙의 특전을 통한 혼인유대 해소
2.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소송절차 규범
3.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교황의 권한과 확대 가능성

결 론  
부 록

## 서 론

가톨릭교회는 원칙적으로 영세자들 사이에 교회법적 형식으로 유효하게 맺은 혼인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로 여긴다.<sup>1)</sup> 혼인의 성사적 유대는 혼인의 완결을 통해 더욱 견고해져 인간의 어떠한 권위와 힘으로도 풀 수 없으며, 단지 죽음만으로 해소될 수 있다.<sup>2)</sup> 또한 유효하게 맺은 비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적 품위를 지니진 않지만, 거룩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자연법(ex iure nature)에 매이게 된다. 비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들에게 속한 법률의 조건과 형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맺은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교회법 제1059조, 동방교회법 제780~781조, 혼인의 존엄 제4조). 마찬가지로, 관면을 통해 유효하게 맺은 가톨릭 영세자와 비영

1) 참조: 교회법 제1055조.

2) 참조: 교회법 제1056-1057조.

세자 사이의 혼인도 자연법에 의해 불가해소성을 지닌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유효하게 맺은 혼인에 대해 국가법 혹은 다른 비가톨릭 종교 법원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이혼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다.<sup>3)</sup>

그러나 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성사와 달리 다른 혼인들은 특별한 견고성(*firmitas*)을 가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불가해소성이 존재하여도, 외적으로 해소의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전은 외적으로 해소가능성을 지닌 경우들을 세 가지로 소개한다. 첫째, 당사자들 양편이나 당사자 한 편이 청원한 미완결된 혼인의 해소를 위한 교황청원(교회법 제1142조). 둘째, 바로로 특전(교회법 제1143조). 마지막으로 비영세자들 사이 또는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맺은 비성사혼 해소를 위한 신앙의 혜택 안에서 교황의 관면<sup>4)</sup> 등이다.

한국교회는 위 해소 방법들 중 오직 바로로 특전만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특히 세 번째 방법인 교황의 관면, 소위 ‘베드로 특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혼인문제를 교황에게까지 직접 올려야 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서에 청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다른 외국어 접근과 번역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sup>6)</sup>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로 특전의 경우처럼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들과 기본사항들을 규정화한다면 신앙의 특전 적용은 더욱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

3) Cf. D. Salachas, K. Nitkiewicz, G. Gallaro, *Inter-Ecclesial Relations between Eastern and Latin Catholics*, Washington D.C., 2009, p.33.

4) Giovanni Paolo II, “Allocutio ad Romanæ Rotæ iudices et administros”(2000.1.21.), in *Acta Apostolicae Sedis*(이하 AAS로 표기) 92(2000), 354-355.

5) 한국교회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20조에 따른 본당신부의 혼인무효 선고 규정이 있으나, 혼인 전 조사(교회법 제1067조)에 해당하기에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6) 참조: 정광웅, 「혼인유대 해소에 대한 교회의 권한과 사목적 배려의 모색」, 『누리와 말씀』 36(2014),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27~228쪽.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의 특전 중 베드로 특전이 무엇이고, 어떠한 역사를 지니며, 어떠한 규범과 절차가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 은전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관련 서류들을 번역하여 기재할 것이다.

## 1. 신앙의 특전을 통한 혼인유대 해소

### 1.1. 바오로 특전

가톨릭교회 내에서 신앙의 특전(Privilegium in favorem Fidei)을 통한 혼인유대 해소의 두 형태를 바오로 특전(Privilegium Paulinum)과 교황 관면에 의해 행사되는 베드로 특전(Privilegium Petrinum)으로 구분한다.<sup>7)</sup> 먼저 바오로 특전은 1코린 7,11~15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두 비영세자들이 맺은 혼인의 해소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하려는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과 더불어 가톨릭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두 비영세자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불가해소성을 지닌다. 바오로 특전의 목적은 세례 받은 이의 신앙과 평화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바오로 사도의 위 구절에 대해 교회법학자들의 해석과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신정법인지, 사도의 권위로 말씀하신 사도들의 법인지, 아니면 예수그리스도께서 수여하시고 사도들이 공표한 특전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전통에 비추어 수 세기 동안 신학적이며 교회법학적으로 오래 숙고된 열매임은 틀림없다.<sup>8)</sup>

7) Cf. A. Abate, *Lo scioglimento del vincolo coniugale nella giurisprudenza ecclesiastica*, Napoli, 1970, p.24.

8) Cf. Sacra Congregatio Sancti Officii, "Instructio, 20 giugno 1866", in *Collectanea S.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seu Decreta Instructiones Rescrip pro Apostolicis Missionibus*, vol.II, Romae, 1907, n.1293: "[...] locus esse potest privilegio in favorem fidei a Christo Domino concessio et a Paulo promulgato"; "S. Uffizio, 11 luglio 1886", in *Collectanea S.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seu Decreta Instructiones Rescrip pro Apostolicis*

사실 교회는 사도의 말씀에 주목한다. 바로 ‘신자 아닌 사람이 헤어져 려 한다면’(1코린 7,15) 새로운 혼인을 맺도록 신자 측에게 부여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교회는 항상 바오로 특전의 적용을 실행법으로 보장하였다. 즉 ‘갈라서기’라는 단어의 명확함과 교회법원에서의 질의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갈라섬’에 대한 조치, 그리고 신자 측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순간부터 전 혼인이 해소되는 규범 등이 그것이다.<sup>9)</sup>

그러므로 혼인 해소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심한 당사자의 세례 사실자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례는 새로운 혼인을 맺을 권리만을 부여하며 현행법에 따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새로운 혼인이 거행 때 신앙의 혜택이 주어지고 전 혼인이 해소되는 것이다.<sup>10)</sup>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의 ‘갈라섬’이란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àsine contumelia Creatoris)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물리적이고 윤리적인 별거로 여긴다(교회법 제1143조 2항). ‘평화롭게 동거하기’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에게 종교를 믿는 자유와 자녀에게 종교교육을 시킬 자유를 주는 행동을 내포한다.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란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일부다처제 방식으로 살았을 경우, 그리고 그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에게 종교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또한

---

*Missionibus*, vol.I, Romae, 1907, n.1295: “Supra scripta postulata intelligi de privilegio a Christo Domino in favorem Fidei concesso et per Apostolum Paulum 1Cor. 7,12 seqq. Promulgato. Hoc di-vinum privilegium in eo consistere [...]”.

9)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Istruzione “*Potestas Ecclesiae*”(이하 *Potestas Ecclesiae*로 표기) (2001.4.30.), in *Enchiridion Vaticanum*(이하 *EV*로 표기) 20(2001), n.583. “la Chiesa infatti intende le parole dell’apostolo nel senso di vera libertà concessa alla parte fedele a contrarre un nuovo matrimonio “se la parte infedele si separa”(1Cor. 7,15). D’altra parte la Chiesa, col trascorrere del tempo, ha garantito sempre più l’applicazione del privilegio paolino con norme positive, fra le quali eccellono sia la precisazione della parola “si separa”, sia la prescrizione affinché “la separazione” risulti attraverso “interpellanze” nel tribunale della Chiesa, sia la norma secondo la quale il matrimonio è sciolto soltanto dal momento in cui la parte fedele contrae un nuovo matrimonio”

10) Cf. L.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Roma, 1994, p.962.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그리스도교 종교 활동을 방해받을 경우, 마지막으로 자녀의 그리스도교 교육을 방해받을 경우 등을 말한다.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함께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로 동의한 경우, 바오로 특전은 적용되지 않으며 결혼 자체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게다가 두 당사자가 모두가 개종하고 세례를 받은 경우, 그들의 혼인유대는 성사혼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바오로 특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 사이에 관면혼한 경우 바오로 특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오로 특전은 두 당사자 모두 세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결혼만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바오로 특전은 의심할 여지없는 두 영세자들의 혼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특전이 이루어진다면 성사적 유대의 절대적인 불가해소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교회법 제1141조). 결국 바오로 특전이 적용되는 혼인들과 교회법 제1148~1149조에 언급된 혼인들(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 감금이나 박해에 의해 동거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은 현행법에 따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최고 권위에 대한 청원 없이 법자체로 해소된다.

## 1.2. 베드로 특전

교회는 바오로 특전의 적용과 더불어 오래 전부터 다른 혼인들에 대한 해소의 권한도 행사하였는데, 신앙의 혜택이라는 같은 기초에서 출발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언급한 범주가 아닌 베드로와 후계자들의 범주에 속하는 특전이다. 소위 ‘베드로 특전’(Privilegium Petrinum)이라 칭한다.<sup>11)</sup>

교회법전은 세례 받은 편 당사자들 사이 혹은 세례 받은 편 당사

11) 사실 ‘베드로 특전’이라는 용어로 확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17년 교회법 제1125조에서 알 수 있듯이 교황들의 현장, 즉 ‘비오 특전’ ‘그레고리오 특전’ ‘바오로 3세 특전’ 등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황이 행사할 수 있는 혼인 해소 방식임을 유추할 수 있다. C. C. Salvador, V. De Paolis, G. Ghirlanda, 『교회법률용어사전』, 한동일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8, 416쪽.

자와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 사이에 미완결된 혼인의 해소(교회법 제1142조)와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들 사이의 혼인을 바오로 특전을 통한 해소(교회법 제1143조)를 다루지만, 자연혼을 맺은 모든 경우들을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례 받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 그리고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 사이에 미신자 장애 관면을 통해 맺은 완결된 혼인도 다루지 않는다. 물론 위와 같은 혼인들도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한 신앙의 혜택으로 교황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이 권한 행사는 시간과 장소에 따른 사목적 요건들, 개별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교황의 최고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적어도 세례 받지 않은 편이 한 당사자에 의해 맺은 이 같은 다른 혼인들은, 만약 해소되어야 할 혼인들이라면 개별 사건에 따라 로마 교황에게 종속되어 있다. 신앙교리성의 신중한 예심 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목적 감수성에 따라 혼인유대 해소가 수여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결한다.”<sup>12)</sup>

과거 자연혼인은 교황의 권위 밖이며, 아무도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해소를 위한 신앙의 혜택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의 반박으로 자연법을 선언하고 해석하는 교황의 교도권 행사는 비영세자에게도 유효하며, 비영세자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초대되고, 은전의 수여로 인한 혼인 유대 해소가 비영세자도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예비신자들의 혼인을 교황이 해소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과 모든 혼인이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종교적이며, 교회의 최고 법률이어야 할 영혼 구원이 비영세자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교회법 제1752조, 교의헌장 제9항; 제48항)<sup>13)</sup> 교황의 권위로 자연혼인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2) *Potestas Ecclesiae*, n.585.

13) Cf. 이상국, 『교회 혼인법』,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406-407쪽; J. BOSCH, “Favor de la fe”, in J. OTABDUY, A. VIANA, J. SEDANO(ed.), *Diccionario general de Derecho Canónico*, Vol.III, Navarra, 2012, pp.926-927.

### 1.3. 베드로 특전에 관한 교회법전 이전의 관행들

16세기 비그리스도교 사회로 선교적 활동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사목적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신대륙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일부다처제의 문제와 결혼한 많은 노예들의 새로운 혼인 문제들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답변은 교황 바오로 3세(Paulus III, 1534~1549년)의 교령 *Altitudo*(1537.6.1.), 교황 비오 5세(Pius V, 1566~ 1572년)의 교령 *Romani Pontifices*(1571.8.1.), 교황 그레고리오 13세(Gregorius XIII, 1572~1585) *Populis*(1585.1.25.)의 교령을 통해 이루어졌고,<sup>14)</sup> 1917년 교회법전의 공포를 시작으로 1983년 교회법전 공포까지 확대되었다. 교황의 권한으로 개별 사건에 따른 혼인유대를 해소하는 관행은 1917년 교회법전 공포 이후에 유럽지역에서만 소개되었다. 20세기 들어서 혼인유대 해소에 대한 사목적 해결을 요구하는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새로운 사회적, 종교적 상황들 안에서 가톨릭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이 큰 원인이었다.

“교황은 교회가 비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 그리고 적어도 세례 받지 않은 한편의 당사자가 있는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확실성 안에서 새로운 사목적 필요성을 맞이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일 개별 경우에 따라 모든 상황을 검토한 후에, 이것이 신앙의 혜택과 영혼의 선익을 위해 타당하게 여겨진다면, 개별적인 경우 안에서 이와 같은 교회의 권한이 행사될 것이다.”<sup>15)</sup>

1917년 교회법전 공포 이후, 신앙의 혜택으로 해소된 경우들이 자주 이루어졌고, 과거 신앙교리성이었던 성무성성(S. Congregatio Sancti Officii)에서 발표한 훈령 「교황의 최고 권위에 따른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를 해소하는 소송명령 규범」(*Norme per l'istruzione del processo nei casi di scioglimento del vincolo matrimoniale in favore della fede mediante l'autorità superiore del Romano Pontefice*, 1934.5.1.)을 통해 가능했다. 이 훈령은 바오로 6세의 명령에 따라 개정 및 추가되었

14) 참조: 이상국, 같은 책, 391쪽.

15) Cf. *Potestas Ecclesiae*, n.587.

고, 바오로 특전 외에 소위 베드로 특전인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를 해소하는 제도는 1973년 12월 6일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Ut notum est*에서 훈령으로 규정된다.<sup>16)</sup> 이 훈령은 기본 원칙들과 절차에 따른 경우들을 언급한다. 다시 말해 신앙교리성에 문서를 보내기 전 소송 관련 훈령이다. 주목할 점은 1934년 훈령에서와 같이 1973년 훈령조차도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출판된 것이 아니라 교구 직권자들에게 은밀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보내졌다. 이는 교회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사도좌 관보의 전달이 마치 이혼을 지지하는 교회로 소개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힌다.<sup>17)</sup>

1934년 훈령과 1973년 소송규범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와 같은 특전을 얻기 위한 소원들이 몇 가지 존재했다. 첫째,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의 경우다. 이 혼인은 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가톨릭신자가 되어 가톨릭신자와 혼인하길 원했다. 1924년 교황 비오 11세가 이 혼인의 유대 해소를 허락하였다. 둘째, 가톨릭 남성 신자는 관면을 얻은 후 다른 비영세자 여성과 혼인하였다. 이후 이혼하여 여자는 가톨릭 세례를 받았고, 가톨릭신자와 혼인하길 원했다. 정확히 바오로 특전은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였다(구법전 1120조 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7년 비오 12세에 의해 해소되었다. 셋째, 가톨릭 신자가 되려는 의지를 지녔고 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원하는 이혼한 비영세자에게 처음으로 신앙의 혜택으로 인한 해소가 허락되었다. 비오 12세와 요한 23세, 그리고 바오로 6세는 이혼한 비영세자와 혼인하려는 가톨릭신자에게 정기적으로 신앙의 혜택을 수여하였다. 첫혼인이 비가톨릭 혼인이어야 하며, 그들 중 적어도 세례 받지 않은 이가 한 명 있어야 한다. 1970년에 이러한 관행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신앙교리성은

16) Cf.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Istruzione “*Ut notum est*”(이하 *Ut notum est* 로 표기) (1973.12.6.), in *EV* 4(1973), nn.2730-2774.

17) Cf. Potestas Ecclesiae, pp.402-403; F. Gravino, “La procedura per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non sacramentale in favorem fidei”, in *Diritto e Reglioni* 2(2014), 26.

이러한 관행을 신학적 관점에서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sup>18)</sup>

## 2.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소송절차 규범

1983년 교회법전과 1990년 동방교회법전 공포 후 더욱더 확실하게 신앙의 혜택과 관련된 규범들이 새로운 입법으로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1년 4월 30일 신앙교리성은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훈령 *Potestas Ecclesia*을 공포한다.<sup>19)</sup> 그러나 이 훈령(1934년과 1973년 훈령과 마찬가지로)도 사도좌 관보에 출판되지 않았으며 두 법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전 훈령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범들은 교황 대사들을 통해 교구장 주교 및 정교회 주교들에게 보내졌다. 이는 대중매체가 이혼을 지지하는 교회로 소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사도좌 관보에 출판하지 않았다.

“교회법전 개정작업 중 교황의 수여를 통해 이루어질 신앙의 혜택으로 인한 혼인유대 해소의 실질적이고 절차적 규정에 대해 심사숙고하였다.<sup>20)</sup> 그러나 훈령 *Potestas Ecclesiae* 서문에서 강조하였듯이 최고입법자는 이 민감한 부분을 법전 마지막 개정판에 포함시키지 말고, 특별 규범에 따른 관련 소송절차를 계속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sup>21)</sup>

18) Cf. P. Huizing, “Diritto canonico e matrimonio fallito”, in *Concilium* 7(1973), 1162; *Ut notum est*, nn.2730-2731.

19) Cf. *Potestas Ecclesiae*, nn.581-640.

20) Cf. I. Gordon, “De processu ad obtinendum dissolutionem matrimonii non sacramentalis in favorem fidei”, in *Periodica* 79(1990), 537-576.

21) Cf. J. Kowal, “Nuove Norme per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in favorem fidei’”, in *Periodica* 91(2002), 465-466. 주목해야 할 점은 라틴교회법전과 달리 동방교회법전 제 1394조에서 사도좌가 정한 특별 규정을 소개하며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Giovanni Paolo II, *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Citta del Vaticano, 1995, can.1384: “Per ottenere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non consumato, oppure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in favore della fede, si osservino accuratamente le norme speciali stabilite dalla Sede Apostolica”).

새로운 훈령 *Potestas Ecclesiae*는 무엇보다도 주교들의 사목적 권고를 다룬다. “신자들이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교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만약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경우들이 교구 내에 존재한다면, 규정 *le Norme*에 따라 주교들이 실제로 허락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실히 심사되어야 한다. 만약 허락되어야 한다면, 주교들은 규정 *le Norme*에 따라 교구 내의 절차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앙교리성에 제출되어야 할 문서들은 모든 면에게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sup>22)</sup>

신앙교리성의 역할은 개별 사건들을 심사하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교황에게 은전을 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sup>23)</sup> 이 성성은 신앙의 특전과 관련된 혼인 업무도 담당한다. 이는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의 소송사유와 성사의 유효성과 관련된 혼인유대의 다른 측면들에 관한 것이다. 그 심사와 판단을 위해 성성은 전문 위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특히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소송사유를 다루는 특별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들과 성사보호관들로 구성되며, 교구법원에서 진행한 소송절차를 심사하고 결정한다.<sup>24)</sup> 마지막으로 그러한 결정은 특별 심리를 거쳐 교황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 2.1. 실체법(제1~10항)

훈령 *Potestas Ecclesiae* 내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소송 규정 *le Norme*는 두 부분으로 나뉘며, 첫 번째 파트는 실체법(제1~10항)과 두 번째 파트는 절차법(제11~25항)으로 소개한다.<sup>25)</sup> 먼저 실체법에 대한 규범들을 살펴보자.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세

22) *Potestas Ecclesiae*, n.592.

23) Cf. *Potestas Ecclesiae*, n.594.

24) Cf. Giovanni Paolo II, Cosnstituzione Apostolica “*Pastor Bonus*”(1988.6.28.), in *AAS* 80(1988): *EV* 11(1988-1989), n.885.

25) Cf. *Potestas Ecclesiae*, nn.593-640.

례 받은 이들 사이에 유효한 혼인은 혼인이 완결된 순간부터 실제로 성사이며 혼인의 성사적 유대를 가진다(교회법 제1055조). 사망을 제외하고 어떤 인간의 권위와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교회법 제1141조). 즉, 성사적으로 결합되고 합당한 성교로 완결된 혼인에 대해서 교황의 권한으로도 해소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누락되거나 그중에 하나만 있다면, 교황의 사면으로 인해 청원자가 새로운 혼인을 요구하든 요구하지 아니하든 혼인은 해소될 수 있다.

1) 세례 받지 않은 두 당사자가 맺은 혼인 혹은 적어도 한사람이 세례 받지 않은 혼인은 신앙의 혜택으로 교황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다.

“적어도 한 당사자가 세례 받지 않고, 그 세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생활을 유지할 때 혼인은 비성사적으로 남아있다. 두 당사자의 세례를 통해 성사혼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완결되지 않은 성사적 유대를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세례 후에 이들은 혼인을 완결하는 어떠한 부부행위도 갖지 않아야 한다.”<sup>26)</sup>

세례 받지 않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맺은 혼인 또는 적어도 한사람이 세례 받지 않은 혼인은 두 배우자 모두가 세례를 받은 후 완결되었다면 신앙의 혜택으로 교황 역시 해소할 수 없다(*Potestas Ecclesiae*, n.593). 두 당사자의 세례 후 혼인의 비완결(성교행위가 없는 경우)은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의 은전이 주어질 수 있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성사적 유대는 혼인이 완결된 경우 죽음을 제외한 어떠한 인간의 권위와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교회법 제1141조). 두 당사자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자연적 결합은 불가해소성을 지닌 하나의 성사가 된다. 혼종혼인도 신앙의 혜택으로 해소될 수 없다. 즉 두 영세자가 맺은 혼인, 하나는 가톨릭, 하나는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즉 정교회, 개신교 사이에

26) Cf. J. Kowal, *op.cit.*, 488.

서 맺은 혼종혼인도 신앙의 혜택으로 해소될 수 없다.

그러나 미신자 장애 관면을 통해 비영세자와 가톨릭신자 사이에 맺은 혼인은 신앙의 혜택으로 교황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비영세자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영세자(정교회, 개신교)와 맺은 혼인도 신앙의 혜택으로 교황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방 정교회는 미신자 장애 관면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7)</sup>

2) 은전 허가 조건들을 소개한다. 혼인예식 때 당사자들이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맺은 혼인의 유효성의 근거가 의심스러운 경우 혼인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교황에게 몇 가지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의심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해야 한다.<sup>28)</sup> 1973년 훈령 *Ut notum est*에서 “다른 이유로 결혼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 해소는 보다 쉽게 인정된다”<sup>29)</sup>고 언급한다. 반면 *Potestas Ecclesiae*은 ‘은전이 보다 쉽게 인정된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청원서에 문제의 의심에 대한 명백한 표시와 함께 성좌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된다고 제시한다.<sup>30)</sup>

은전이 부여될 때, 부부가 헤어져야 하며 동시에 행정적인 이혼과 함께 부부생활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Potestas Ecclesiae*, n.596). 단순히 싸움이나 가족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불충분하며, 여러 화해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sup>31)</sup> 예를 들어 이혼 후 피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거나 이미 새로운 혼인생활을 했으며 자손이 이미 태어난 경우 화해가 불가능해진다(*Potestas Ecclesiae*, n.626). 절차법적 관점에서 사회 이혼명령의 사본, 그리고 만약 본인 혹은 상대 혼인 예정자의 혼인

27) Cf. 이상국, 앞의 책, 406쪽: “구체적으로 교종은 미완결된 성사혼인, 완결 여부와 상관없이 비신자장애관면혼인이나 자연혼인의 유대를 해소시킬 수 있다(교종 비오 12세의 1941년 10월 3일 훈화).”

28) Cf. *Potestas Ecclesiae*, n.605.

29) *Ut notum est*, n.2740.

30) Cf. J. Kowal, *op.cit.*, 501.

31) *Ibid.*, 492.

무효 판결문이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27).

청구인은 부부생활의 실패에 대해 전적이거나 지배적이거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 가정불화는 양측 배우자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 규정은 매우 현실적이다. 게다가 새로운 혼인예식을 맺거나 유효하게 만들어야 하는 당사자(새 혼인의 상대자)는 본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전 혼인의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새 혼인 상대자가 배우자의 첫 혼인에 대한 파기의 주요 책임자가 아니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596). 예를 들어 별거 후에 만났거나, 서로 알고 있었지만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최종 이별 후에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파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 당사자들과 증인들의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주된 책임이 청원자에게 있다면 은전은 수여될 수 없다. 대신 피청구인이 주된 책임을 갖고 있거나 동일한 죄책을 지니고 있다면 은전이 수여될 수 있다.

미신자 장애 관면을 통해 맺어진 비성사적 혼인의 해소를 위한 은전이 수여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하나는 가톨릭 당사자가 영세자와 새로운 혼인예식을 맺길 원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세례 받기를 원하고 영세자와 새로운 혼인 예식을 맺길 원하는 경우다(*Potestas Ecclesiae*, n.600). 1976년 신앙교리성의 답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sup>33)</sup> 청원자가 가톨릭 신자든 비가톨릭 영세자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혼인이 ‘성사혼’이어야 한다.<sup>34)</sup>

새로운 미신자 장애 관면 혼인은 신앙의 혜택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즉 첫혼인을 해소하려는 당사자가 개종하지 않은 비영세자와의 새로운 예식을 통한 해소의 가능성은 배제된다. 미신자 장애 관

32) *Ibid.*, 493.

33)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Responsum”(1976.4.5), in Istitutum Iuridicum Claretianum(ed.), *leges Ecclesiae*, vol.5(annis 1973~1978 editae), Roma, 1980, n.4442: “Pars non baptizata petere nequit dissolutionem matrimonii in favorem dei, nisi convertatur; pars vero catholica tandem dispensationem petere potest dummodo non intendat novas nuptias contrahere cum dispensatione ab impedimento disparitatis cultus.”

34) Cf. F. Gravino, *op.cit.*, 32~33.

면으로 거행된 혼인의 경우, 새로운 혼인 전 항상 세례 받지 않은 편 당사자가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다른 영세자와 혼인을 맺으려 하는지 살펴야 한다.<sup>35)</sup>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당사자들 중 한 명 혹은 둘 다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청원한 당사자 혹은 혼인 예정자의 개종 의지에 확실한 의문이 있을 경우 주교는 신앙교리성에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02).

청원자인 세례 받지 않은 예비자의 비성사적 혼인유대 해소의 은전을 부여받기 위해, 즉 어린 입교예식을 한 이가 가톨릭교회 내에 세례를 받기 위해 새 혼인예식이 세례 받은 후로 연기되어야 한다. 만약 중대한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긴급히 세례를 받아야 할 윤리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03). 이 경우 은전이 부여될 답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붙는다: “post eiusdem oratoris baptismum”(청원자의 세례 후). 또 혼인 예정자인 예비자와 새로운 혼인을 준비하는 가톨릭 신자인 청원자의 비성사적 혼인유대 해소의 은전을 부여받기 위해, 혼인예식은 세례 받은 후로 연기되어야 한다. 만약 중대한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긴급한 세례를 받아야 할 윤리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03). 이 경우 은전이 부여될 답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붙는다: “post eiusdem partis desponsæ baptismum”(혼인 예정자의 세례 후). 가톨릭 신자의 혼인유대 해소의 은전을 부여받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하길 원하는 혼인 예정자인 비가톨릭 영세자와의 새로운 혼인을 맺어야 하며, 새 혼인예식은 개종 후로 연기되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03). 이 경우 은전이 부여될 답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붙는다: “post eiusdem partis desponsæ conversionem”(혼인 예정자의 개종 후).<sup>36)</sup>

35) 이 경우에도 새로운 혼인예식을 거행하길 원하는 당사자가 가톨릭 신자이든 비가톨릭 영세자든 중요하지 않다. 다만 비영세자인 배우자가 나중에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기 위해 가톨릭교회 밖에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배제되어야 한다. Cf. J. Kowal, *op.cit.*, 497.

36) 세례를 기다리기 불가능한 경우, 청원자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미신자 장애 관련이 필요하다. 다만, 예비자는 세례를 받을 때까지 가톨릭신자와 맺기 위한 미신자 장애에 매이게 된다. 그리고 개종을 기다리기 불가능한 경우, 혼종혼인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 Cf. D. Salachas,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non sacramento

또한 청원자가 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연적 의무들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의 은전을 수여받을 수 없다. 정의, 자애, 형평성의 이유로 청원자는 첫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윤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갖으며, 자녀의 종교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예심관 판사는 특히 은전 수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내의 추문도 유념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청원자에게 질문하여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04; 630).<sup>37)</sup> 물론 교회법 제1071조 1항 3호의 이와 같은 염려를 언급하고 있다. 교구직권자의 허가 없이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을 주례할 수 없다. 또한 은전의 수여로 인한 추문을 걱정해야 한다면, 신앙의 혜택으로 비성사 혼인의 해소의 은전은 주어질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주교가 자신의 최종 의견(*votum*) 안에서 추문이 배제되도록 힘써 그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길 힘써야 한다. 당연히 어떤 이에게 수여될 신앙의 혜택이 다른 신자들에게 영적 해를 끼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의무들과 추문의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갖는 경우라면 교구 직권자는 신앙교리성과 협의할 수 있다.<sup>38)</sup>

다만, 이러한 혼인유대 해소 방법이 청원자에게 신앙 자체에 대한 도구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맺은 혼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성사혼의 해소 은전이 수여된다면 그 신앙 자체가 도구화될 위험성이 존재한다(*Potestas Ecclesiae*, n.598). 따라서 이 경우 성청의 심의로 허락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톨릭이 아닌 영세자 혹은 비영세자와 새로운 혼인을 맺으려는 가톨릭 신자인 청원자 혹은 혼인 예정자는 자신이 신

in favore della fede”, in *IURA ORIENTALIA* 6(2010), 218–219.

37) Cf. F. Gravino, *op.cit.*, 34.

38) 그러나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상담할 필요는 없다. 청원서를 성청에 제출할 때 특정한 어려움과 추문의 위험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청원서에 충분한 정보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술들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은전의 수여를 방해하는 그 어려움들에 대한 심사숙고는 성청의 역할이다. Cf. J. Kowal, *op.cit.*, 500.

양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비가톨릭 당사자는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가톨릭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고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 해소의 은전은 서면으로 제출된 선언이 두 당사자의 동의하에 서명되는 경우만 수여된다(*Potestas Ecclesiae*, n.637; 교회법 제1086조 1항; 제1125조). 또한 은전 수여를 권고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청원한 당사자가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혼인을 시도했거나 공동으로 살고 있는지 주교는 추가 설명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38).

## 2.2. 현행 절차 규정

현행 절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교회의 권위 2) 예심관 판사, 성사보호관 그리고 공증관 임명 3) 당사자들의 소환 4) 당사자 및 증인의 증언과 증거들 5) 예비자의 은전 청원 6) 예심의 종료 및 신앙교리성에 문서를 전달.

### 1)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교회의 권위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 해소의 소송을 진행하는 관할권자는 교구장 주교이며 교회법 제381조 제2항에 언급된 그와 동등시되는 이들에게만 해당된다(*Potestas Ecclesiae*, n.595).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특별위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교회법 제134조 3항). 교구장 주교는 소송으로나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교구 법원들의 재판관들 또는 이 직무를 위해 승인된 이들 중 선택된 예심관 판사에게 그 임무를 맡길 수 있다(*Potestas Ecclesiae*, n.606). 이 경우 원본과 동일한 위임장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2) 예심관 판사, 성사보호관 그리고 공증관 임명

소송은 예심관 판사, 성사보호관, 공증관의 임명으로 소송이 시작된다. 그 임명은 교구장이 서명한 것으로 서면으로 공증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소송을 위한 재판부는 모든 사건에 대한 증언을 받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성될 수 있다(*Potestas Ecclesiae*, n.606). 공증관의 협조와 성사보호관의 적극적인 참여는 소송행위들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혜택으로 인한 은전 수여를 합당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sup>39)</sup>

## 3) 당사자들의 소환

예심단계에서 두 배우자는 모두 합법적으로 소환되어야 하고 조사되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09). 예심관인 판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피청구인 당사자를 만나고 피청구인은 그의 증언을 통해 조사에 협조한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소환을 거부하면, 교회법 제 1592조에 따라 결석한 자로 선언되어야 한다.<sup>40)</sup>

그러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나 증인이 답변하기를 거부한다면, 또는 예심관 앞에 출두하거나 증언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증관 앞에서나 그 밖의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든지 진정성과 확실성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그 당사자의 진술을 요구하여 수집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17, 교회법 제1528조).

39) Cf. F. Gravino, *op.cit.*, 37-38.

40) 교회법 제1592조: “1항 소환된 피청구인이 출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결석 변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50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답변도 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은 그를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하고 소송 사건이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종국 판결과 그 집행에까지 진행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소환이 유용 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을, 필요하다면 새로운 소환을 통해서라도 확증하여야 한다.”

제3자인 당사자, 즉 청구인과 새로운 혼인을 맺길 원하는 이 혹은 맺은 이는 공식적으로 소환되어야 하고 조사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 당사자가 해소를 요청한 전 혼인에 관하여 당사자가 계속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② 전 혼인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 ③ 요청한 당사자의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 혼인이 어긋나게 된 그의 종교적 악습과 무책임에 대해 ④ 첫 혼인 당시 당사자들의 세례의 상태에 대한 그의 증언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⑤ 혼인 예정자가 전 혼인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판명되면, 신앙의 혜택에 의한 혼인 해소의 은전은 정의와 윤리적 공정에 따라 수여될 수 없다.<sup>41)</sup>

#### 4) 당사자 및 증인의 증언과 증거들

당사자와 증인의 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적합한 문서들과 도덕적 확실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앙의 합당한 증언들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n.608-610).<sup>42)</sup> 당사자와 증인의 진술은 공증관의 협조와 성사보호관의 동석으로 예심관 판사에 의해 진행된다. 각 진술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한 선서문과 증인, 예심관, 마지막으로 공증관의 서명이 필요하다. 만약 선서를 거부하면 선서 없이 진술할 수 있다(*Potestas Ecclesiae*, n.613).

예심과정의 목적은 모든 의심의 여지들을 제거하는데 있다. 특별히 두 배우자 중 한 명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 즉 신앙의 혜택에 의한 혼인 해소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세례를 받지 않는 당사자의 부모나 친척, 또는 어린 시절에 함께 살고 알고 지내던 이들이 조사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의심을 없애고 세례가 수여되지 않았다는 도덕적 확신에 도달하기 위함이다.<sup>43)</sup> 이를 위해 세례 받

41) Cf. D. Salachas, *op.cit.*, 221.

42) 편지,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한 증언인 경우, 예심관 판사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매우 불확실한 증명력을 가진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성과 신빙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증관이나 다른 합당한 사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Cf. *Ibid.*, 222.

43) Cf. L. Sabbarese,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in favore della fede: la fase diocesana della procedura*, Città del Vaticano, 2010, p.77.

지 않았다고 말하는 당사자는 어린 시절을 지낸 구체적인 장소, 특히 자주 다녔던 종교적 장소, 혹은 그가 혼인했던 교회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혼인은 미신자 장애로 인한 관면으로 거행된 경우, 예심관 판사는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처럼 관면서류 사본을 요청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n.619~623).

이미 언급했듯이, 두 사람의 세례 후 혼인이 완결되지 않은 것은 신앙의 혜택에 의한 혼인 해소의 은전 수여를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혼인 해소의 은전이 요청된 기간 동안, 세례 받지 않은 배우자가 세례를 받고 다른 배우자와 살거나 별거 후 다시 합쳐 완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면, 은전은 수여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사자들을 조사해야 하며 증인들의 증언도 들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24).

### 5) 예비자의 은전 청원

세례 받지 않은 청원자가 어린 입교 예식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 예비자인 경우 은전은 “post baptismum”(세례 후)라는 문구와 함께 수여된다. 비영세자인 혼인 예정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당사자들이 세례 받기를 원하는 원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본당 신부도 조사되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n.632~633). 청원한 당사자든 혼인 예정자든 종교적 신심을 문서로 표명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34). 본당 신부의 의견은 신앙의 혜택에 의한 혼인 해소의 요청에 대한 진실성을 증언한다. 세례나 신앙선서 관련 서류들이 추가되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635).

비가톨릭 영세자인 청원자가 가톨릭교회로 개종하길 원하는 경우, 은전은 “post eiusdem oratoris conversionem”(청원자의 개종 후)라는 문구와 함께 수여된다. 비가톨릭 영세자인 혼인 예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미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은 시간에 대해 청원한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는 세례 후 혼인이 완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예심관 판사의 임무는 모든 문서들을 성사보호관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그들은 혼인유대

해소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Potestas Ecclesiae*, n.636).

## 6) 예심의 종료 및 신앙교리성에 문서를 전달

예심 종료와 함께 모든 서류를 받은 후, 교구장 주교의 임무는 청원서에 ‘최종 의견’(votum)을 작성하고, 특히 은전 수여를 위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최종 의견’(votum)과 성사보호관의 의견, 그리고 자료의 목차 및 개요(sommario)와 함께 인쇄본으로 만들어진 모든 문서들의 사본 3개를 신앙교리성에 전달한다. 또한 그 지역 언어와 스타일로 작성된 모든 문서들이 교황청에서 사용하는 유럽권 언어들 중 하나로 번역되도록 해야 하며, 선서문을 첨부한다(*Potestas Ecclesiae*, nn.639~640).<sup>44)</sup> 개요(sommario)는 청구인, 피청구인 그리고 제3자에 관한 필수 정보들에 대한 약식의 문서다. 목차는 모든 문서들과 증언들, 기타 증서와 해당페이지가 있는 목록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문서의 각 페이지에 항상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sup>45)</sup>

소송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의 순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2) 청구인의 청원서 3) 재판부 구성 4)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증언 5) 세례에 관한 다양한 문서와 증거 6)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 7) 제3자의 증언(혼인 예정자) 8) 당사자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조사 9) 예심관 보고서 10) 성사보호관의 의견서 11) 교구장 주교의 청원 12) 모든 문서 인증 13) 목차.<sup>46)</sup>

원본이든 인증된 사본이든 위에서 제시한 문서들은 공증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게다가 신앙교리성에 보내야 할 문서는 어떠한 개입과 위조가 있을 수 없기에 주교의 공증관에 의해 검증된 사

44) Cf. Giovanni Paolo II, *Cosnstituzione Apostolica "Pastor Bonus"*, n.848.

45) Cf. F. Gravino, *op.cit.*, 49.

46) Cf. D. Salachas, *op.cit.*, 224.

본이어야 한다(*Potestas Ecclesiae*, nn.611~612). 문서들은 원본이거나 공증된 동본으로 제출되어 재판관과 당사자들이 검사해 볼 수 있도록 법원 사무처에 맡겨진 것이 아니면 재판에서 증명력이 없다. 예심관은 원본 문서 또는 실제 사본만 수집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교회법 제1544조). 마지막으로 신앙교리성의 임무는 전달된 개별 사건들을 검토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은전을 얻기 위한 요청서를 교황에게 제출하는 것이다(*Potestas Ecclesiae*, n.594). 이 성청은 신앙의 특전과 관련된 혼인 업무도 담당한다. 장관급 성사보호관들과 전문가들이 특별 심의회를 조직한다.

### 3.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교황의 권한과 확대 가능성

이러한 권한은 과거 13세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많은 교회법학자들은 1588년 클레멘스 8세 교황(1592~1605)때 8명의 추기경들의 회합에서 비영세자의 혼인 문제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추기경들은 비영세자들의 혼인 해소의 권한이 교황에게 존재한다고 여겼고, 당시 모든 추기경들이 그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물론 17세기까지 교황의 권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18세기 초 교회법학자와 신학자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매듭지었다.<sup>47)</sup>

교황은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최고의 완전한 권한으로 보편교회의 최고목자가 지닌 직권에 따라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성립되었지만 미완결된 혼인 혹은 비성사혼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교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리 권한을 주교들에게까지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먼저 GHIRALDA 교수는 혼인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생운명

47) Cf. L. Chiappetta, *Il Matrimonio nella nuova legislazione canonica e concordataria*, Roma, 1990, p.366.

공동체를 이루어 부부의 선익과 자녀출산 및 교육을 위해 질서 지어진 자연법은 교황에 의해서도 결코 관면될 수 없는 것이지만 특수한 경우들과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관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8)</sup> 즉 특수한 경우와 특정한 조건에 따라 주교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한다. J. HERVADA<sup>49)</sup> J. M. SERRANO-RUIZ도 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주장을 내놓는다.<sup>50)</sup>

A. ABATE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근거로 주장한다. 주교에 대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절”(교회헌장 27)라고 표현하며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 전체에 그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고유한 “직접적 직권”(주교교령 8)을 스스로 가지기 때문에 대리 권한은 주교의 임무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불가해소성이라는 신정법의 관면은 교황에게 유보된 문제나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 대리 권한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주교들이 대리 권한을 지닐지라도 그 권한을 불가해소성이라는 신정법 내에서 행사할 수 없다. 통치의 전반적인 선익과 교회의 유용성 측면에서 유일하게 보편교회의 목자인 교황만이 그러한 권한이 유보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들은 이제 불가해소성이라는 신정법 내에서 주교들이 혼인유대해소의 권한을 통해 대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사목 교역을 수행하는데 요구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sup>51)</sup> 따라서 “가장 공통된 판결은 교황이 원칙적으로 다른 주교들에게 혼인 유대에 대한 그의 대리 권한에 참여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황의 활동 내에 작용하는 카리스마적 권한이 아닌 무류적 교도권의 행사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sup>52)</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여러 나라의 주교들은 성립되고 미완

48) Cf. G. Ghirlanda, *Il diritto nella Chiesa mistero di comunione*, Roma, 2015, p.584.

49) Cf. P. Lombardia, J. I. Arrieta(ed.),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1986, p.818.

50) Cf. P. V. Pinto(a cura di),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Studium Romanae Rotae - Corpus Iuris Canonici» II*, Città del Vaticano, 2001, p.667.

51) Cf. A. Abate, *Il matrimonio nella nuova legislazione canonica*, Roma-Brescia, 1985, p.228.

52) Cf. *Ibid.*, p.231.

결된 혼인의 관면 권한이 주교들에게까지 수여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많지만 현재까지 그 권한은 위임되지 않았다.<sup>53)</sup> 따라서 적어도 관구장인 대주교들, 가톨릭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sup>54)</sup> 그러나 훈령(1934년과 1973년 훈령과 마찬가지로)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되지 않았으며 두 법전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존재할 것이다. 출판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가 이혼을 지지하는 교회로 소개될 수 있다는 위협성을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전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L. CHIAPPETTA는 교황의 권한이 혹은 특전이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일 가능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55)</sup>

## 결론

한국교회는 2015년에 공포된 자의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예수님」(*Mitis Iudex Dominus Iesus*)을 통해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1심 법원에서 무효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현실적으로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혼인무효소송의 접근이 익숙하다. 따라서 한국교회 내에서 신앙의 특전을 통한 혼인유대 해소를 접근하는 일은 다소 어색하고 어려운 절차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서유럽 언어권의 나라들에서는 신앙의 특전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사실 아직도 선교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경우 성사 혼보다는 비성사혼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고, 이혼율도 또한 높은 상태이다. 비성사혼을 한 신자들이 이혼 후 새로운 혼인을 맺은 경우, 교회에서의 성사생활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본의 아니게 신앙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한국교회는 본당

53) Cf. J. Prader, "Il matrimonio in Oriente e in Occidente", *Kanonika* 1(1992), 246.

54) Cf. D. Salachas, *op.cit.*, 226.

55) Cf. L. Chiappetta, *op.cit.*, p.381.

신부의 무효선고와 바오로 특전을 통해 비성사혼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지만, 미신자 장애 관면혼과 비영세자와 영세자 사이의 자연혼에 대한 해소는 혼인무효소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구 법원을 통해서 이미 파기된 혼인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톨릭교회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비영세자들에게 무턱대고 교회 내에 있는 법원으로 안내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 내에 신앙의 특전, 소위 베드로 특전을 적용하려는 접근이 큰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면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혼인유대 해소 방법에 대한 기초를 놓는 작업이라 여긴다. 또한 활발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러한 해소 방법에 대해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현실 가능한 작업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특전 적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적용을 위한 일정한 기준들을 정립해 둘 필요가 있으며,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록-156)

전 혼인/ 재혼에 관한 진술서(former/ subsequent marriages)

※ 3명의 당사자들의 전 혼인과 재혼에 관한 구체적 정보  
 ※ [detailed information for all former/ subsequent marriages of the three Parties]

	이름(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청구인 (Petitioner)	청구인의 세례 상태 (Petitioner's baptismal status):		세례 날짜(Baptism's date):  세례대장 번호(Certificate N.):
	<input type="checkbox"/> 세례 받지 않음(unbaptized) <input type="checkbox"/> 비가톨릭 세례(baptized non Catholic): <input type="checkbox"/> 가톨릭(Catholic): <input type="checkbox"/> 유효하지 않은 세례(invalid baptism) <input type="checkbox"/> 모름(unknown) <input type="checkbox"/> 기타(other):		기타사항(further Annotations):
	혼인 (Marriage)	날짜(Date):	증명서(Certificate N.):
	이혼 (Divorce)	날짜(Date):	증명서(Certificate N.):
	혼인무효소송 (Ecc. Nullity)	날짜(Date):	증명서(Certificate N.):

56) 신앙교리성 관련 문서 목록(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 Lista completa dei Documneti),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_doc\\_index\\_it.htm](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_doc_index_it.htm), 2020.4.10. 검색.

피청구인 (Respondent)	이름(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피청구인의 세례 상태 (Respondent's baptismal status):		세례 날짜(Baptism's date): 세례대장 번호(Certificate N.):
	<input type="checkbox"/> 세례 받지 않음(unbaptized) <input type="checkbox"/> 비가톨릭 세례(baptized non Catholic): <input type="checkbox"/> 가톨릭(Catholic): <input type="checkbox"/> 유효하지 않은 세례(invalid baptism) <input type="checkbox"/> 모름(unknown) <input type="checkbox"/> 기타(other):		기타사항(further Annotations):
	혼인 (Marriage)	날짜(Date):	증명서(Certificate N.):
	이혼 (Divorce)	날짜(Date):	증명서(Certificate N.):
	혼인무효소송 (Eccl. Nullity)	날짜(Date):	증명서(Certificate N.):

현배우자 혹은 예정자 (Third Party)	이름(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세례 상태 (Third Party's baptismal status):		세례 날짜(Baptism's date): 세례대장 번호(Certificate N.):
	<input type="checkbox"/> 세례 받지 않음(unbaptized) <input type="checkbox"/> 비가톨릭 세례(baptized non Catholic): <input type="checkbox"/> 가톨릭(Catholic): <input type="checkbox"/> 유효하지 않은 세례(invalid baptism) <input type="checkbox"/> 모름(unknown) <input type="checkbox"/> 기타(other):		기타사항(further Annotations):
	혼인 (Marriage)	날짜(Date):	증명서(Certificate N.):
	이혼 (Divorce)	날짜(Date):	증명서(Certificate N.):
	혼인무효소송 (Eccl. Nullity)	날짜(Date):	증명서(Certificate N.):

부록-2

개요(SUMMARY)

가. ‘신앙의 특전을 통해 혼인유대 해소’를 위해 제기된 혼인  
(A. Marriage presented for dissolution in favorem fidei)

1. 청구인 (Petitioner)	이름(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생년월일 증명서(testimony):	
	혼인 상태(baptismal status)		
	혼인 당시 세례 상태 (at the time of marriage):  <input type="checkbox"/> 세례 받지 않음 (unbaptized) <input type="checkbox"/> 비가톨릭 세례 (non Catholic) <input type="checkbox"/> 가톨릭(Catholic) <input type="checkbox"/> 유효하지 않은 세례 (invalid baptism) <input type="checkbox"/> 모름(uncertain)	현재 세례 상태 (at present):  <input type="checkbox"/> 세례 받지 않음 (unbaptized) <input type="checkbox"/> 예비자(catechumen) <input type="checkbox"/> 비가톨릭 세례 (non Catholic) <input type="checkbox"/> 성공회, 정교회 (Anglican or orthodox) <input type="checkbox"/> 가톨릭(Catholic) <input type="checkbox"/> 유효하지 않은 세례 (invalid baptism) <input type="checkbox"/> 모름(uncertain)	날짜 및 증명서 (Baptism's date and Certificate N.):   비가톨릭 세례 증명서 (Certificate of non catholic batism):
	전 혼인 혹은 재혼이 있었습니까(Former/subsequent marriages)? <input type="checkbox"/>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예(YES) 관련 서류를 첨부하십시오(attached special form).		

2. 피청구인 (Respondent)	이름(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생년월일 증명서(testimony):	
	혼인 상태(baptismal status)		
	혼인 당시 세례 상태 (at the time of marriage):  <input type="checkbox"/> 세례 받지 않음 (unbaptized) <input type="checkbox"/> 비가톨릭 세례 (non Catholic) <input type="checkbox"/> 가톨릭(Catholic) <input type="checkbox"/> 유효하지 않은 세례 (invalid baptism) <input type="checkbox"/> 모름(uncertain)	현재 세례 상태 (at present):  <input type="checkbox"/> 세례 받지 않음 (unbaptized) <input type="checkbox"/> 예비자 (catechumen) <input type="checkbox"/> 비가톨릭 세례 (non Catholic) <input type="checkbox"/> 성공회, 정교회 (Anglican or orthodox) <input type="checkbox"/> 가톨릭(Catholic) <input type="checkbox"/> 유효하지 않은 세례 (invalid baptism) <input type="checkbox"/> 모름(uncertain)	날짜 및 증명서 (Baptism's date and Certificate N.):   비가톨릭 세례 증명서 (Certificate of non catholic batism):
	전 혼인이 있었습니까(Former marriages)? <input type="checkbox"/>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예(YES) 관련 서류를 첨부하십시오(attached special form).		

  

3. 혼인 (Petitioner)	날짜(Date):	청구인의 당시 나이 (Petitioner's age):	피청구인의 당시 나이 (Respondent's age):
	혼인관계증명서 (certificate):	기타 서류(other documents):	

4. 자녀 (Children)	자녀수(Number):	미성년자라면,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if minor(s), who has custody)?	
		세례여부(Baptismal status)	증명서(Certificate)
	1		
	2		
	3		

5. 이혼 (Divorce)	양편 당사자 모두 세례 받을 때까지 함께 사셨습니까 (Cohabitation since baptism of both Parties)? <input type="checkbox"/> 예(YES) <input type="checkbox"/> 아니오(NO)	
	최종 별거날짜(Date of final separation):	
	최종 이혼날짜(Date of Divorce Absolute):	이혼 판결서(Divorce Decree):

나. 현재 맺은 혹은 예정인 혼인 (B. Proposed Marriage)			
1. 현 배우자 혹은 예정자 (Third Party)	이름(Name)	한글(Korean):	영문(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생년월일 증명서(testimony):	
	혼인 상태(baptismal status)		
	<input type="checkbox"/> 세례 받지 않음(unbaptized) <input type="checkbox"/> 예비자(catechumen) <input type="checkbox"/> 비가톨릭 세례(non Catholic) <input type="checkbox"/> 성공회, 정교회 (Anglican or orthodox) <input type="checkbox"/> 가톨릭(Catholic) <input type="checkbox"/> 유효하지 않은 세례 (invalid baptism) <input type="checkbox"/> 모름(uncertain)		날짜 및 증명서 (Baptism's date and Certificate N.):
			비가톨릭 세례 증명서 (Certificate of non catholic batism):
전 혼인이 있었습니까(Former marriages)? <input type="checkbox"/>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예(YES) 관련 서류를 첨부하십시오(attached special form).			

2. 혼인상태 (Proposed Marriage)	동거중입니까(Partis cohabiting)?		<input type="checkbox"/>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예(YES)		
	혼인을 맺었습니까 (Marriage attempted)?		<input type="checkbox"/>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예(YES)		
			날짜 및 증명서 (Date & Certificate):		
	관면을 받았습니까 (Dispensation DC requested)?		<input type="checkbox"/>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예(YES)		
	허락되었습니까 (Permission MM requested)?		<input type="checkbox"/>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예(YES)		
이 혼인 중 낳은 자녀가 있습니까 (Children of this union)?	자녀수 (number)	명	세례 증명서 (Certificate):		

3. 절차적의 단계 (Procedural steps)	청구인 진술서 일련번호: (Letter of Petition, dated and signed)		재판부 임명 일련번호: (Nomination of the Commission)	
	본당신부의 의견 일련번호: (Letter of the Parish Priest)		예심관의 의견 일련번호 (Remarks of the Instructor)	
	성소보호관의 의견 일련번호: (Observations of the Defender)		주교의 최종 의견 일련번호 (Votum of the Bishop)	
	페이지 숫자가 정확합니까 (Pages numbered consecutively)? <input type="checkbox"/> 예(YES)		목차가 정확합니까(Index)? <input type="checkbox"/> 예(YES)	
	세 개의 사본이 공증되었습니까 (Three copies of acts, authenticated)? <input type="checkbox"/> 예(YES)			
	<input type="checkbox"/> 청원자는 소송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The Petitioner is able to contribute the payment)?			

### 부록-3

#### 서약 [Promises (Potestas Ecclesiae, n.597)]

##### 1. 가톨릭 편 당사자의 서약(Promises of the Catholic Party)

서명인 사제 앞에서, 나 \_\_\_\_\_은(는) 변함없이 굳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혼인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가톨릭신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교육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In the presence of the undersigned priest, I hereby promise to practice my faith, and to fulf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my obligation to have all children who may be born to our marriage baptized in the Catholic Church and carefully raised in the knowledge and practice of the Catholic faith.

서명: \_\_\_\_\_

##### 2. 비 가톨릭 편 당사자의 서약(Promises of the non-Catholic Party)

서명인 사제 앞에서, 나 \_\_\_\_\_은(는) 나의 배우자가 천주교 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혼인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시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허락할 것을 서약합니다.

In the presence of the undersigned priest, I hereby promise that I shall permit my spouse to practice the Catholic religion and to fulfill the solemn promise that all the children of our marriage will be baptized and raised in the Catholic faith.

서명: \_\_\_\_\_

##### 3. 성직자의 증명(certification)

나는 서명한 사제로서, 양편 당사자들이 가톨릭 성직자 앞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서약하였음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I, the undersigned priest, hereby certify that both parties have freely made the above promises in my presence.

서명: \_\_\_\_\_

## [참고문헌]

### 1. 교황 문헌

Giovanni Paolo II, “Allocutio ad Romanæ Rotæ iudices et administros”, 2000.1.21.,  
in *AAS* 92(2000).

\_\_\_\_\_, Cosnstituzione Apostolica “Pastor Bonus”(1988.6.28.), in *AAS*  
80(1988): *EV* 11(1988~1989).

### 2. 교회법 문헌

Ioannes Paulus II, *Codex Canonum Ecclesianum Orientalium*,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5.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라틴어-한국어 대역 <수  
정판>, 한국주교회의의 교회법위원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3. 교황청 문헌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Istruzione “Ut notum est”(1973.12.6.), in *EV*  
4(1973).

\_\_\_\_\_, “Responsum”(1976.4.5), in *Istitutum Iuridicum*  
*Claretianum*(ed.), *leges Ecclesiae*, vol.5(annis 1973~1978 editae), Roma, 1980.

\_\_\_\_\_, Istruzione “Potestas Ecclesiae”(2001.4.30.),  
in *EV* 20(2001).

Sacra Congregatio Sancti Officii, “Instructio, 20 giugno 1866”, in *Collectanea S.*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seu Decreta Instructiones Rescripa pro*  
*Apostolicis Missionibus*, vol.II, Romae, 1907.

\_\_\_\_\_, “S. Ufficio, 11 luglio 1886”, in *Collectanea S.*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seu Decreta Instructiones Rescripa pro*  
*Apostolicis Missionibus*, vol.I, Romae, 1907.

### 4. 단행본

Abate, A., *Lo scioglimento del vincolo coniugale nella giurisprudenza ecclesiastica*,

- Napoli, 1970.
- \_\_\_\_\_, *Il matrimonio nella nuova legislazione canonica*, Roma-Brescia, 1985.
- Chiappetta, L., *Il Matrimonio nella nuova legislazione canonica e concordataria*, Roma, 1990.
- \_\_\_\_\_,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Roma, 1994.
- Ghirlanda, G., *Il diritto nella Chiesa mistero di comunione*, Roma, 2015.
- Lombardia, P., Arrieta. J. I.(ed.),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1986.
- Pinto(a cura di), P. V.,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Studium Romanae Rotæ-Corpus Iuris Canonici» II*, Città del Vaticano, 2001.
- Salachas, D., K. Nitkiewicz, G. Gallaro, *Inter-Ecclesial Relations between Eastern and Latin Catholics*, Washington D.C., 2009.
- Sabbarese, L.,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in favore della fede: la fase diocesana della procedura*, Città del Vaticano, 2010.
- 이상국, 『교회 혼인법』,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6.

## 5. 정기간행물

- Gravino, F., “La procedura per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non sacramentale in favorem fidei”, in *Diritto e Regioni* 2(2014).
- Gordon, I., “De processu ad obtinendum dissolutionem matrimonii non sacramentalis in favorem fidei”, in *Periodica* 79(1990).
- Huizing, P., “Diritto canonico e matrimonio fallito”, in *Concilium* 7(1973).
- Kowal, J., “Nuove Norme per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in favorem fidei’”, in *Periodica* 91(2002).
- Prader, J., “Il matrimonio in Oriente e in Occidente”, *Kanonika* 1(1992).
- Salachas, D., “Lo scioglimento del matrimonio non sacramento in favore della fede”, in *IURA ORIENTALIA* 6(2010).
- 정광웅, 「혼인유대 해소에 대한 교회의 권한과 사목적 배려의 모색」, 『누리와 말씀』 36(2014),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 6. 사전류

- OTABDUY, J., VIANA, A., SEDANO, J.(ed.), *Diccionario general de Derecho Canónico*, Vol.III, Navarra, 2012.
- Salvador, C. C., De Paolis, V., Ghirlanda, G., 『교회법률용어사전』, 한동일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8.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선교지역이며 성사혼보다는 비성사혼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비성사혼에 대한 신앙의 특전을 통해 혼인유대 해소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접근하였다. 소위 ‘베드로 특전’이라고 칭하는 교황의 관면은 과거의 관행과 달리, 2001년 4월 30일 신앙교리성은 신앙의 혜택으로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훈령 *Potestas Ecclesia*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행해진 특전의 간략한 역사와 함께 과거 훈령들(1934년과 1973년)과 훈령 *Potestas Ecclesia*의 비교분석을 통해 입법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전에 적용되는 경우들, 특전 허가 조건들과 현행 절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소개하였다. 또한 혼인유대 해소를 위한 교황의 권한과 지역교회 관할권자들인 교구장 주교들에게 그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앙교리성에 전달해야 하는 관련 문서들의 번역함으로써 한국교회 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바오로 특전의 경우처럼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들과 기본사항들을 규정화한다면 신앙의 특전 적용은 더욱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베드로 특전, 신앙의 특전, 혼인유대 해소, 불가해소성.